

## 벤처활성화 보완대책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지난 6월 8일 오전 당정협의회를 열고 벤처 활성화 보완대책을 마련했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12월 24일 벤처기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한 지 6개월여 만에 내놓은 보완대책으로,

지난해 발표된 활성화 대책이 주로 세제 금융지원에 초점이 맞춰진 반면

보완대책은 창업초기 벤처기업 지원과 벤처기업의 경영환경 개선에 초점이 맞춰졌다. 다음은 '벤처활성화 보완대책' 상세내용이다.

### I. 벤처활성화 보완대책의 배경

■ '벤처기업 활성화 대책'(04.12.24) 이후 창업증가, 코스닥시장·벤처캐피탈 활성화 등 **벤처업계의 역동성** 회복

■ IT·BT·NT 등 신산업분야 창업 촉진과 벤처기업 활성화의 **효과 확산**을 위하여 '**벤처활성화 보완대책**' 마련

① 향후 우리경제의 **Cash Cow** 창출을 위해서는 **신산업분야 창업 촉진**과 **창업초기기업의 안정적 성장**이 매우 중요

○ 그러나 창업초기기업은 '**정보의 비대칭성**' 등으로 **재원조달에 애로**가 있어 보완대책 마련

- 예컨대 창업보육센터(BI) **입주기업의 상당수가 기술사업화 능력부족, 기술 및 시장에 대한 정보부족**으로 사업화 또는 성장단계에 진입하지 못하는 실정

- 벤처캐피탈(VC) 등 투자자도 대부분 창업한 지 **3년 이상 된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향

② 또한 인력양성, 수출촉진, 수요기반 확충 등 '**자생력 있는 벤처생태계 조성**'을 위한 추가대책도 마련

### II. 벤처활성화 보완대책의 주요추진과제

◇ '**벤처활성화 보완대책**'은

- (1) 창업초기기업에 대한 지원강화
- (2) 벤처기업의 경영환경 개선에 중점

⇒ 10대 부문의 총 43개 세부과제로 구성

### 1. 창업초기 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 ① 창업보육기능 활성화

■ 중소기업청의 **실태조사**를 통한 **BI 구조조정** 추진

○ 공실율이 높고 보육의지와 성과가 낮은 **BI는 지정 취소**

○ 보육능력이 우수하고 사업화 성공률이 높은 BI에 대해 **보육실 확장 건립비 지원**

- '05~'10년간 **자립운영이 가능한 BI**를 현행 30개소에서 **150개소**로 확대

■ **BI 보육기업의 사업화 성공률** 제고

○ BI 운영비 지원을 위해 실시하는 운영실태 평가 시 **사업화 성공률**에 대한 **평가비중(현행 5%)을 확대**

\* 현재 매년 BI 운영실태를 A~D의 4등급으로 구분·평가하여 운영비(0~5천만원) 차등지원

\*\* BI 평가비중(%) : BI매너저(18), 입주기업 만족도(10), 경영·기술지원서비스 제공(10), 연간보육실 운영율(5), 고용창출(5) 등

○ **시범적으로 10개의 BI**를 선정하여 **벤처캐피탈에 위탁** 또는 **연계함**으로써 보육기업의 **사업화 유인**을 확대

○ **BT(생명공학)·NT(나노공학)** 등 장기간 보육이 필요한 분야의 입주기업의 경우 **보육기간을 연장**

· 보육기간 : (현행) 3년 → (개선) 5년

○ BI 규모가 500평 이상인 경우 보육실 면적의 **30% 이내**에서 **생산형 보육기업**에 우선 제공

○ BI 입주 창업기업도 대학 내 도시형 공장등록을 허용

\* 벤처특별법상 대학 내 벤처기업에 대해서만 도시형 공장등록 허용

■ 지역특성에 맞는 BI로 전문화 유도

- 지역특화산업을 전문적으로 육성하는 BI(지역특화기업입주 비율50% 이상)에 대해 운영비 및 확장사업비를 우선지원

② 창업초기 기업에 대한 투·융자 확대

■ 「모태 Fund」의 초기단계 기업에 대한 투자확대

- 창업 3년 미만 기업에 집중투자하는 조합에 대해 모태펀드의 출자비율을 30%(일반조합의 경우)에서 최고 50%까지 확대

\* 우대출자비율(40~50%)은 창투사의 경영성과 등을 감안하여 결정

- 창업기업 전문투자조합에 대한 「모태 Fund」 출자분의 수익한도를 설정하여 업무집행조합원(창투사)에 인센티브 부여

■ 초기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확대

-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조성기금의 개발·특허기술 사업화 융자지원 사업\*을 연간 1000억원 수준으로 확대

\* 중산기금에서 '05년 중 800억원을 지원할 계획

- 매년 유망 차세대 분야 예비창업기업에 대해 업체당 2억원의 연구개발·사업화 자금 출자

\* 무담보·무이자 전환사채(CB) 형태로 지원하고 사업 성공 시 Buy-back 또는 유통시장을 통해 투자자금 회수

■ 기보의 「기술이전보증제도\*」를 통한 보증지원 추진

\* 국내의 연구기관·대학·기업 등의 기술을 이전 받아 사업화할 때 소요되는 비용을 사업화 단계별로 구분하여 보증

\*\* 기술이전보증재원은 '05년 기술평가보증재원 (2.5조원)을 활용

■ '패자부활프로그램'의 1호 대상자를 금년 7월 중 선정

- '05.4월 중 중소기업청에서 벤처기업협회의 도덕성 심사를 위하여 8000만원 기지원

신청대상자 공고(5월 16일~6월 15일) → 도덕성 평가 (벤처기업협회 6월 15일~7월 중순) → 사업성 평가(신·기보 7월 중순) → 제1호 패자부활 대상자 선정 (7월 중)

③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재원 확대

■ 국민연금은 금년 중 1500억원 출자하여 벤처투자 조합 6개를 추가 결성하고 향후 출자규모를 점진적으로 확대

■ 산업은행 및 기업은행이 각각 2000억원, 1200억원의 중소·벤처기업 전문펀드를 조성하여 투자(기조성, 투자준비 중)

■ 지식기반서비스업 등에 중점 투자하는 전문펀드 결성 등을 통해 창투사의 서비스업 분야에 대한 투자확대 유도

④ 기술평가 및 기술사업화 촉진

■ 하반기 중 「표준화된 기술평가등급」 개발을 완료

- 현재 5개 기관(기술거래소, 기보, 산업은행 등)이 공동 참여하여 A~E 까지 5등급의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검증 작업 중

⇒ 산자부의 부품·소재육성사업, 중산기금의 개발·특허기술사업화 지원 시 표준화된 기술평가등급 시범활용 추진

■ 출연연구소 연구원이 개발한 기술 사업화 인센티브 확대

- 기술료수입 중 연구원 인센티브 비율을 35%에서 50%이상으로 확대

■ 대학 및 출연연구소가 「주식회사 형태의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연구결과를 활용한 창업을 촉진

- 금년 중 벤처특별법,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법 등에 허용근거 마련

\* 대학 내 산학협력단(비영리법인)은 창업기업에 대한 현물출자만 가능하고, 대덕특구 내 출연연구소는「대덕연구개발특구 특별법」에 따라 연구소기업(자회사) 설립이 가능하나 여타 출연연구소는 법상 자회사 설립 불가

⑤ 벤처캐피탈의 투자관련 규제완화

경영지배목적 투자 허용

■ 벤처캐피탈의 투자기업에 대한 경영권확보가 제한되어 있어 출자를 통한 창업초기기업의 자금조달, 부실징후 기업 구조조정 등에 애로

〈 경영지배목적 투자제한으로 인한 문제점 예시 〉

- 창업초기단계의 중소·벤처기업 특히 자본금이 미약한 기업은 벤처 캐피탈로부터 **충분한 자금조달을 기대하기 어려움**
  - 창업주나 경영진의 **경영·사업화 능력이 부족하거나 도덕적 해이**가 있는 경우에도 창투사가 이를 지원하거나 견제하기 곤란
  - 창업주가 M&A를 찬성하지 않아 생계형 회사로 전락하거나 실기하여 **사업이 부실화되는 경우 발생**
- \* 미국의 경우 벤처캐피탈이 창업에서부터 IPO까지 단계별로 기업가치를 제고할 수 있도록 3~4차례 벤처기업의 CEO를 교체

⇒ 창업투자회사, 창업투자조합의 **7년 이내 창업기업에 대한 경영지배목적 투자를 허용** (창업지원법 시행규칙 개정)

\* 현재는 최초 투자한 날부터 **6월 이상 지난 기업에 대해 회생지원, 인수, 합병**을 위한 경우 **중소기업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최장 5년 동안** 허용하고 있으나

- 문제가 발생한 경우의 **수동적·한시적** 경영지배에 그쳐 벤처캐피탈의 적극적 기업가치 제고에는 한계

**유한회사형 투자조합 결성**

- 우리나라의 경우 창투사(주식회사)가 일반적으로 「자본금계정」을 통한 **직접투자**와 「투자조합」(업무집행조합원 즉, GP로 참여)을 통한 **간접투자**를 병행하고 있어
  - 투자비용 및 종목결정 등에 있어 **창투사 주주의 이익과 개별조합원의 이익이 상충되는 경우 발생**
  - 창투사 소속 펀드매니저의 성과보수 일부가 창투사 및 주주에게 배분되어 **펀드운용을 통한 수익창출의 인센티브가 약한 편**
- \* 미국의 투자조합은 대부분 **전문벤처캐피탈리스트가 직접 설립한 유한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가 업무집행조합원(GP)으로 참여하고 조성한 펀드를 통해서만 투자하여 유한회사의 주주(벤처캐피탈리스트)와 조합출자자 간 **이해가 일치**

⇒ **벤처캐피탈리스트가 설립한 유한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가 업무집행조합원(GP: General Partner)으로 참여하는 **벤처투자조합을 시범 결성**

○ 모태펀드의 출자를 통하여 미국방식의 **유한회사형 투자조합 활성화 유도**

\* 벤처기업육성특별법 개정('04.12월)으로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GP)으로 유한회사의 참여를 이미 허용**

**2. 벤처기업의 경영환경 개선**

**⑥ 고급인력양성 지원**

■ 매년 실시하는 **직업훈련기관 및 과정평가를 강화하여 우수훈련과정에 대한 훈련비지원 확대**

- '05년 중 우수훈련과정에 대해 훈련비를 **20% 추가지원**
- 평가결과 최하위 등급(10% 내외) 훈련기관은 **1년간 지원 중단**

■ **중장기적으로 훈련비 지원방식을 보조 이외에 융자방식도 활용하는 방안 검토**

〈 기대 효과 〉

- ① 자부담으로 인해 고급과정에 지원하지 못했던 문제점을 해결하고 필요한 시기에 훈련비를 융자받아 교육훈련 수료 가능
- ② 보조를 융자로 전환 시 교육기관 및 대상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
- ③ 교육기관 간 가격경쟁보다 취업률 등 품질경쟁 유도

**⑦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제도 보완**

■ 기술자료를 직접 제공하는 대신 제3의 기관에 예치하는 **기술자료 예치제도(escrow)를 도입**

- 하반기 **실태조사**를 통해 금년 중 **표준화도급계약서**에 구체적인 필요 사항 반영

■ 산자부가 온라인에 구축 중인 「**대·중소기업 협력 포럼**」을 활용해 대·중소기업 불공정거래관련 애로를 파악·해소

■ 대기업 협력업체로 구성된 「**수탁기업체 협의회**」를 통해 불공정거래 **로 발굴·처리**

\* '05년 하반기부터 **대·중소기업협력재단**(정부출자 이사 : 산자부 차관보, 중기청 차장, 공정위 사무처장 등) 사업으로 추진

■ 중장기적으로 당사자 간 분쟁의 자율적 해결을 위한 **조정(알선) 전치주의 도입**과 실효성 있는 **분쟁조정기구 설립 추진**

- 공정위 내 '하도급단기인하 신고센터'의 기능을 강화하여 하도급 관련 불공정거래 민원을 신속히 처리

⑧ 벤처기업의 수출역량 강화

■ 중소·벤처수출기업을 대상으로 **담보 없이도 수출신용장(L/C) 등에 근거한 금융지원을 활성화**

- 수출초기기업에 보증을 제공하는 신보의 '**수출인큐베이팅 보증제도\***'를 **활성화** (연간 300개 기업지원 추진)

\* '04년 수출인큐베이팅 보증잔액은 333억원 (무역보증의 경우 1만 8820억원)

- L/C 구매확인서를 근거로 담보없이 지원하는 중진공의 '**수출금융지원 사업\***'을 확대 ('05년 700억원)

\* '05.4월 말 현재 454억원 대출(업체당 최고 20억원 한도)

- 수출입은행의 '**무담보 소액대출제도\***'의 도입 및 **점진적 확대 운용** ('05년 중 500억원 운영계획)

\* 기술력·LC거래 여부 등에 기초하여 5억원 한도 내에서 무담보 대출 ('05.2월 시행)

■ IT분야(SI포함)에 대한 EDCF 자금지원을 **점진적으로 확대**

\* IT분야 EDCF실적(억원) : (03) 445 → (04) 543

- 정부간 협정 등의 EDCF **자금지원 절차를 간소화**

■ 중소·벤처기업 해외진출을 위한 **i-Park(해외 IT지원센터)\***와 **INKE 해외지회\*\***를 확대운영

\* IT중소기업 수출지원을 위해 미국 등 5개국에 8개의 i-Park 운영 중

\*\* INKE(International Network of Korean Entrepreneurs)는 미국·유럽 등 세계 각지의 한민족 벤처기업인 네트워크 (현재 23개의 해외지회 설치·운영)

⑨ 산·학·연 네트워크 및 수요기반 강화

■ Focus Group (정보통신), 기술상품기획연구회 (부품소재) 등 **분야별 전문협의회**를 타업종까지 **확산 유도**

■ 연구기관, 대학, 차세대성장동력 사업단과 벤처캐피탈리스트 등 **투자업계**의 **정례 모임(Technology Forum)** 개최

■ IT대기업 (KT·SKT 등)이 도입 예정인 **수요예보제**의 정착 및 여타 공기업·비IT 제조업으로 **확산 유도**

- '업종별 대·중소기업 협력위원회(주재 : 산자부장관)'를 통하여 여타 분야로 확대 추진

■ 빌려쓰는 **맞춤형 방식(ASP) 활용** 기업을 '04년 37만개에서 '08년 **100만개 중소기업으로 확산**

■ SW에 대한 **GS인증제품**의 경우 중기청의 공공기관 우선구매대상 제품 (구매자의 책임면책)으로 포함하여 지원

⑩ 농업분야 벤처 활성화

■ **농업벤처창업경연대회, 농업벤처투자박람회**를 개최하여 농업벤처 활성화 및 투자촉진

■ 농업전문투자조합의 **투자대상분야 의무 투자비율을 하향조정하여 민간**의 **농업전문투자조합 참여 유도**

\* 농업분야와 기타 바이오분야 투자비율을 6:4에서 5:5로 변경

■ '06~'07년간 **1000억원** 규모의 **농업전문투자조합 결성 추진**

\* 재원은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 농협출자, 민자유치 등으로 조성

■ 운영 중인 289개의 BI 중 우수 BI를 선정하여 **농업벤처기업 보육을 위한 보육실 확장 건립비 지원**

# 벤처활성화 보완대책 과제별 추진계획

추진과제	주관기관	일정
<b>① 창업보육가능 활성화 (7개)</b> BI 구조조정 추진(지정취소, 확장비지원) 사업화 성공률에 대한 평가비중 확대 벤처캐피탈에 BI 위탁·연계 경영 시범사업 BT·NT 등 업종의 보육기간 연장 생산형 보육기업에 보육실 우선 제공 BI입주기업의 대학 내 도시형 공장 등록 허용 지역특성에 맞는 BI로 전문화 유도	중기청 중기청 중기청 중기청 중기청 중기청 중기청	'05~'10년 '05년 하반기 '05년 하반기 '05년 하반기 '05년 하반기 '05년 하반기 '05년 하반기
<b>② 창업초기 기업에 대한 투·융자 확대 (5개)</b> 모태펀드의 초기단계 기업투자 확대 개발·특허기술 사업화 융자지원 확대 매년 차세대 분야 예비창업기업 자금출자 기부의 기술이전보증제도 활성화 패자부활 프로그램 제1호 선정	중기청 중기청 중기청 재경부 재경부, 중기청	'05년 하반기 '06년 상반기 '06년 상반기 '05년 하반기 '05년 하반기
<b>③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지원 확대 (3개)</b> 국민연금의 벤처기업 투자 확대 산업은행 및 기업은행의 PEF 조성 지식기반서비스업종 등의 투자확대 유도	복지부 재경부 중기청	'05년 하반기 기 완료 '05년 하반기
<b>④ 기술평가 및 기술사업화 촉진 (4개)</b> 표준화된 기술평가 등급 개발 완료 정책자금 지원 시 시범활용 출연연구소 연구원의 기술 사업화 인센티브 확대 대학 및 출연연구소의 자회사 설립허용	산자부 산자부, 중기청 과기부 교육부, 중기청	'05년 하반기 '05년 하반기 '05년 하반기 '05년 하반기
<b>⑤ 벤처캐피탈의 투자관련 규제완화 (2개)</b> 창투자, 창투자조합의 경영지배 목적 투자 허용 유한회사가 GP인 벤처투자조합 시범결성 ※ '05년 중 유한회사 설립 및 모태펀드 출자조합 선정 완료	중기청 중기청	'05년 하반기 '06년 상반기
<b>⑥ 고급인력 양성 지원 (2개)</b> 우수후련과정에 대한 훈련비지원 우대 확대 등 훈련비 보조를 용자로 전환하는 방안 검토	노동부 노동부	'05년 하반기 '05년 하반기
<b>⑦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제도 보완 (5개)</b> 기술자료 예치제도 도입 대·중소기업 협력포럼 구축 활용 수탁기업체 협의회 구축 활용 조정(알선) 전처주의 도입 등 하도급신고센터 기능 강화	공정위 산자부 중기청 공정위 공정위	'05년 하반기 '05년 하반기 '05년 하반기 '06년 상반기 '05년 하반기
<b>⑧ 벤처기업의 수출역량 강화 (6개)</b> 수출인큐베이팅 보증제도 확대 수출금융지원사업 확대 무담보 소액대출 제도 확대 IT분야 EDCF 자금지원 확대 EDCF 자금지원 절차 간소화 i-park 및 INKE 지회 확대 운영	재경부 중기청 재경부 재경부 재경부 정통부, 중기청	'05년 하반기 '05년 하반기 '05년 하반기 '05년 하반기 '05년 하반기 '05년 하반기
<b>⑨ 산·학·연 네트워크 및 수요기반 강화 (5개)</b> Focus Group, 기술상품기획연구회 확산 연구기관, 대학 등과 투자업계 정례모임 수요예보제 확대 맞춤형방식(ASP) 활용기업 확산 GS인증제품의 우선구매 대상으로 포함	산자부, 정통부, 중기청 중기청, 과기부 산자부 정통부 정통부, 중기청	'05년 하반기 '05년 하반기 '05년 하반기 '08년까지 '05년 하반기
<b>⑩ 농업분야 벤처 활성화 (4개)</b> 농업벤처창업경연대회, 투자박람회 개최 농업전문투자조합의 의무투자비율 조정 1000억원 규모의 농업전문투자조합 결성 추진 농업벤처기업 보육실 확장 건립비 지원	농림부 농림부 농림부 농림부	'05년 하반기 '05년 하반기 '07년까지 '05년 하반기

# 벤처기업경영재기지원제도 시행공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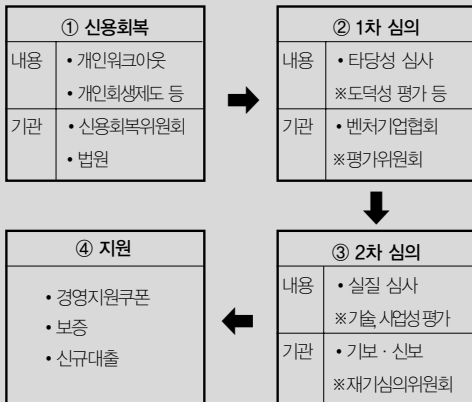
## 실패를 극복하며 배운 경험은 곧 사회적 자산!

벤처기업협회는 정직하게 기업을 경영하다가 실패한 벤처기업인의 소중한 경험을 사회적 자산화하고자 마련한

‘벤처기업경영재기지원제도(벤처패자부활제)’를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 1. 지원 절차

- 정부로부터 ‘1차 도덕성평가기관’으로 지정된 협회는 도덕성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실패한 벤처기업인을 대상으로 도덕성 평가를 실시한 후 일정 수준 이상의 평가를 받은 기업인을 보증기관에 추천함



\* 최종 평가를 거친 기업에 대한 지원여부는 보증기관에서 결정하며, 최대보증한도 30억원(운전자금 또는 기술개발자금 10억원 및 시설자금 소요비용) 내에서 지원 예정

### 2. 신청 대상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중소기업청으로부터 확인 받은 벤처기업 가운데 1년 이상 경영활동을 하다가 실패하여 청산절차(폐업)를 거쳤으며, 다음 조건에 합당한 기업 대표(실패 당시 법인 대표)
  - 폐업(청산)절차를 밟은 기업 대표
  - 개인 신용 불량인 없는 기업 대표
  - 총 부채가 30억 미만인 기업 대표
  - 금융기관(신용보증기관) 및 금융기관 이외의 채권자와 각각 채무액의 1/2 이상에 대하여 채무상환약정을 체결한 기업 대표
- \* 기보·신보에 채무관계가 있을 경우 ‘보증금지기업’ 조항상 **최종대위 변제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인은 보증이 금지되므로 해당 기업 대표는 제외)**

### 3. 신청 방법

- 벤처기업협회 홈페이지(www.kova.or.kr)에 게시된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서를 작성한 후 구비서류와 함께 우편 및 방문 접수(온라인 접수 불가)

### 4. 구비서류

- 필수제출서류
  - 신청서
  - 기업워크아웃(폐업 또는 벤처확인제외)과정 기술서
  - **채무변제유예합의서**(채무조정합의서, 채무상환약정서 대체가능)
  - 보유기술확인서 / 사업계획서 등등
- 참고제출서류
  - 기업재무제표
  - 기타 증빙자료(소명자료) 등등
- \* 도덕성평가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 시 신청인이 직접 서류 구비하여 제출

### 5. 신청기한

- 7월 15일 접수마감  
(이후 매월 15일 마감, 마감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일까지 접수)

### 6. 접수문의

- 벤처기업협회 벤처기업경영재기지원제도 담당
  - 전화 : 02-6009-4100(내선 302) / 팩스 : 02-6009-4115
  - 홈페이지 : www.kova.or.kr / 이메일 : briankim@kova.or.kr
  - 주소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1-7 한국기술센터 17층(우135-080)

기타문의는 전화또는 홈페이지를 이용하기바라며,  
관심있는 많은 기업인의 신청을 바랍니다.

**벤처기업협회 · 벤처윤리위원회**